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‘21년 의사 국가시험이 상·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되고, 상반기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이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인 2월 10일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,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1. 1. 14. ~ 2021. 1. 28.)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국방부장관은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제출기한을 「의료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다.

제11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2항에 따른 지원자”를 “제1항에 따른 지원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까지”를 “제7항까지”로 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국방부장관은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「의료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중보건 의사 등 지원서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전에 「의료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(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9조(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국방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 의사 편입 지원서 제출기한을 「의료법」 제9조 제1항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다.</u>
③ · ④ (생략)	<u>④ · 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u>
⑥ ~ ⑧ (생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19조(의무 · 법무 · 군종 · 수의사관 후보생의 병적 편입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19조(의무 · 법무 · 군종 · 수의사관 후보생의 병적 편입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국방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「의료법」 제9조 제1항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다.</u>

송부하여야 하며,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. ⑤·⑥ (생략)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 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 ⑧ ----- 제7항까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38